

제 501~1 호

1975. 5. 12.

발행인 : 서울특별시청 구 자 훈

편집 : 문화공보실장 조 용 하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 시 보

차 례

◎ 조 례	
제 950 호 : 서울특별시립아동보호소설치조례 폐지조례	3
제 951 호 : 서울특별시연료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3
제 952 호 : 서울특별시릉치지구건축조례	3
◎ 규 칙	
제 1470 호 : 서울특별시립아동보호소적제 폐지규칙	6
제 1471 호 : 서울특별시연료시험소적제중개정규칙	7
◎ 고 시	
제 66 호 : 도시계획사업 ( 도로 ) 실시계획인가	7
제 67 호 : 도시계획사업 ( 도로 ) 실시계획인가	7
제 68 호 : 도시계획사업 ( 고등학교 ) 시행허가	8
◎ 공 고	
제 105 호 : 종로구청장공인개각공고	9
제 106 호 : 1975년도 제 1거분계산세 ( 도시계획세 , 소방공동시설세 ) 징수규에	9
◎ 사 령	10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아동보호소설치조례폐지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인

1975년 5월 12일

◎서울특별시조례제 950 호

서울특별시립아동보호소  
설치조례폐지조례

서울특별시조례제 145 호 ( 1958.2.26 ) 서울특별시립아동보호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연로시험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인

1975년 5월 12일

◎서울특별시조례제 951 호

서울특별시연로시험소  
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연로시험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 조 ( 위치 ) 시험소의 위치는 시장이 따로 공고한다.

제 3 조 제 4 호중 "고압가스용기 및" 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봉치지구건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인

1975년 5월 12일

◎서울특별시조례제 952 호

서울특별시봉치지구건축조례

제 1 조 ( 목적 ) 이 조례는 건축법제 33 조 및 건축법시행령제 144 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치지구내에서의 건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 지구내의 자연장치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용도제한 ) 봉치지구내에서는 건축법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한다 )

제 142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별 표 2에 기재한 건축물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시장
2. 고물상
3. 전염병원, 정신병원, 마약진료소  
장 의사, 가축병원
4. 자동차정유소, 자동차판매소, 자동차정비소, 자동차부품상
5. 저판장
6. 제재소, 목재판매소, 건재상
7. 양곡가공업소 다만, 제과정유  
제외한다.
8. 공장
9. 창고 다만, 연면적 200평방미터 미만의 다른 용도에 부속되는 창고를 제외한다.
10. 철물점, 공구판매점
11. 옥외 작업장을 갖는 건축물
12. 연면적 3,000평방미터 이상의 학교
13. 기타 시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연충치유지해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건축물

제 3조 (건축물의 규모) ①총치지구내에서는 3층이상의 3각형의 바닥면적중 최대바닥면적이 2,0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②총치지구내에서는 건축면적이 60평방미터 이하인 주택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제 4조 (건축물의 형태) 총치지구내에서는 3층이상의 부분으로서 건축물의 전면길이와 측면길이와의 비율 또는 측면길이와 전면길이와의 비율이 1:5 이상인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구의 자연충치를 유지하기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조 (건폐율등) ①총치지구내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대지면적의 1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총치지구의 지정 이전에 이미 대지로 조성된 대지 기타 대지조성에 관한 제한을 받지 않는 대지는 10분의 4까지로 할 수 있다.

<p>②봉치지구내의 대지의 조성면적은 대지의 용도에 따라 다음에 계기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p> <p>1. 대지조성면적이 600평방미터 이하인것 (인접하여 대지가 조성되지 않은 경우로서 주택의 대지에 한한다) : 토지면적의 10분의 4</p> <p>2. 기타의대지 : 토지면적의 10분의 3</p> <p>제 6 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봉치지구내에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p>	<p>700평방미터로 한다. 다만, 봉치지구의 지정이전에 이미 조성된 대지 기타 대지조성에 관한 제한을 받지 않는 대지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230평방미터로 한다.</p> <p>제 7 조 (대지안의 공지) 봉치지구내의 건축물은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다음포에 계기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선으로 부터의 거리에 관한 규정은 주택에 한하여 적용한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133 718 358 808">구 분</th> <th data-bbox="358 718 591 808">건축선으로부터의 거리 (미터)</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133 808 358 887">1층건축물</td> <td data-bbox="358 808 591 887">2.5</td> </tr> <tr> <td data-bbox="133 887 358 947">2층이상인건축물</td> <td data-bbox="358 887 591 947">2.5</td> </tr> </tbody> </table>	구 분	건축선으로부터의 거리 (미터)	1층건축물	2.5	2층이상인건축물	2.5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594 718 811 808">양측면경계선으로 부터의거리(미터)</th> <th data-bbox="811 718 1064 808">후면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 (미터)</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594 808 811 887">1.5</td> <td data-bbox="811 808 1064 887">1.5</td> </tr> <tr> <td data-bbox="594 887 811 947">1.5</td> <td data-bbox="811 887 1064 947">2</td> </tr> </tbody> </table>	양측면경계선으로 부터의거리(미터)	후면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 (미터)	1.5	1.5	1.5	2
구 분	건축선으로부터의 거리 (미터)												
1층건축물	2.5												
2층이상인건축물	2.5												
양측면경계선으로 부터의거리(미터)	후면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 (미터)												
1.5	1.5												
1.5	2												
<p>제 8 조 (용적율) 봉치지구내의 건축물의 용적율은 60%를 초과할 수 없다.</p> <p>제 9 조 (건축물의 높이) 봉치지구내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8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광호텔, 학교, 기념관, 기념탑, 박물관, 종교</p>	<p>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16미터까지 할 수 있다.</p> <p>제 10 조 (기존건축물 및 대지) ① 봉치지구의 지정 이전의 기존건축물로서 봉치지구의 지정에 의하여</p>												

그 건축제한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것 (종전의 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배된 기존건축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영제 142조 제 10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이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중 "2분의 1"을 "5분의 1"로 한다.

② 봉치지구의 지정이전에 이미 분할된 대지로서 봉치지구의 지정에 의하여 제 6조 단서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것에 대하여는 그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영제 142조 제 1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당시 종전의 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건축 또는 대지제 2조 및 제 6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건축물 또는 기본할대지에 대하여는 제 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립아동보호소직제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인

1975년 5월 12일

◎ 서울특별시규칙제 1470 호

서울특별시립아동보호소  
직 제 폐 지 규 칙

서울특별시규칙제 1053 호 ( 70.9.1 )

자 서울특별시립아동보호소 직제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7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연로시험소지제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1975. 5.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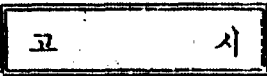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규칙제 1471호

서울특별시연로시험소지제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연로시험소지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5조 제2항제2호중 가목을 삭제하  
고 나목내지 라목을 가목내지 다목  
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고시제 66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

1. 건설부고시제 186호(62.12.20)로  
고시된 명물동3가-성대간도로 확장공  
사에 대하여 다음과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제25조와 제26  
조 및 건설부고시제 123호(73.4.4)에 의  
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국

건설행정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 5. 22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지의위치 : 종로구 명물3  
가, 명물2가

2. 사업의종류 및 명칭 : 명물3가-  
성대간도로 확장공사

3. 사업의규모 : 도시계획도로  
B = 8.0미터 L = 250미터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5. 사용 또는 수용할토지(건물) 변  
천토지조서

6. 착수 및 준공예정일 : 74.12. .  
75. 6. .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  
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성명 : 별첨토지조서

◎ 서울특별시고시제 67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

1. 건설부고시제 289호(74.8.26)  
로 고시된 삼검대학 진입로 확장공  
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25조와 제26조 및 건설부고시제123호(73.4.4)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국 건설행정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 5. 12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지의위치 : 동대문구 전농동

2. 사업의종류 및 명칭 : 산업대학 진입로 확장공사

3. 사업의 규모 : B = 15 미터

L = 122 미터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 : 75.2.3-75. 5. 30

6. 사용 또는 수용할토지 : 별첨토지조서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제4조 제3항의 관계인 주소성명 : 별첨토지조서

◎ 서울특별시고시제 68호

도시계획사업(고등학교)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고시제87호(74.7.4)로 시설결정 및 지적고사된 당시 도시계획사업인 광명고등학교 시설위사업시행을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건설부고시제123호(73.4.4)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당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경기도 교육위원회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음.

1975. 5. 8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지 : 경기도 시흥군 세면 광명리산93의 3번지(별첨)

2. 사업의종류및명칭 : 광명고등학교 교사신축 및 교지정지공사

3. 면적 또는 규모 : 5,640 평

4. 사업시행자와 주소성명 : 경기도교육위원회 교육감 신승순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1975. 4-1975. 7. 31

6.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별첨도면과·함음(도면생략)

경도면은 서울특별시청과 경기도 교육  
위원회에 보관

공 고

◎ 서울특별시 공고 제 105 호

종로구청장공인개각공고

다음과같이 당시 산하 종로구청장의

폐 기 인 영

종로구청장인



종로구청장인  
(호적, 병사용)



공인을 폐기하고 개각 사용토록 하였  
기 이를 공고함.

1975. 5. 12

서울특별시 장

1. 공인명 종로구청장인  
종로구청장인 (호적, 병사용)
2. 사용일시 : 1975. 5. 12 09:00
3. 공인의 인영

개 각 인 영



◎ 서울특별시 공고 제 106 호

1975년도 제 1기분

재산세 (도시 계획세 포함) 징수유예

1975년도 제 1기분 재산세 도시세

회세, 소방공동시설세의 납기를 5월 1  
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정하여 징수

하여 왔으나 납기단축으로 인하여

시민의 기한내 납부가 곤란할것으로

예상될뿐 아니라 가산금을 더내시는

시민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지방

세법 제 41조 제 2항에 의하여 16일

간징수 유예하고 5월 31일까지 징수



기로 하였으니 이 날까지 완납하시어  
가산금을 내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5. 5. 12

서울특별시장 구자훈

사 령

◎ 1975. 5. 12

북악공원 지방토목 홍중철  
관리사무소 기원보

성동구 근무를 명함

성 동 구 지방토목기원 강석인

북악공원관리사무소 근무를 명함

구의수원지 지방전기 김영호  
기사보

도시가스사업소 근무를 명함

종 로 구 지방건축기 정홍근  
원보시보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건축기원 강정휘

주택건설사업소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보전 최중선  
보건소 기사보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제 1, 2 호 규정에 의거 감봉 6 월에 처함

서대문구 지방보전기사 윤정로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제 1, 2 호 규정에 의거 감봉 1 월에 처함

성 동 구 지방토목기원 최건창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제 1, 2 호 규정에 의거 감봉 3 월에 처함

성 동 구 지방토목기원 강석인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제 1, 2 호 규정에 의거 전책에 처함

미아리보조 지방전기기사 유정현  
수원지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제 1, 2 호 규정에 의거 전책에 처함

중부병원 지방보전기원 송문옥  
(X 선)

정신병원 근무를 명함

은평출장소 지방토목과 유탁준  
(토목과장)

하수과 하수관리계장에 포함

개량 1 과 지방토목기사 김인규

개량 2 과 개량 2 계장 직무대리  
를 명함.

시 설 과 지방토목기사 조병성

급수과 급수장지계장 직무대리  
를 명함

<p>성 복 구 지방토목기사 박수돈  은평출장소 토목과장 직무대리  을 명함  ○ 1975. 5. 13  회 계 과 지방행정주사보 장옥수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p>	<p>관악구보건소 지방행정  서 기 보 박창진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청소 1 과 지방행정 조낙희  사 무 원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p>
---	--

서울특별시